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박수연 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9579호
시행일자 2018. 11. 6.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참 조
제 목 「행위·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39호(2018.11.5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 규정에 의한 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5호, 2018.9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내용 : 기술개발노력 가산 제도 신설

나. 시행일 : 2018년 11월 6일

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